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급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2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제 안 경 위	1
II.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III. 검 토 의 견: 국 가 유 공 자 우 선 주 차 구 역 설 치 · 운 영 및 보 조 금 지 급 ...	2
※ 참 고 자 료	8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1. 27.
3. 회부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근거로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확대·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급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의2(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현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는 두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취지¹⁾를 근거로 지방자치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임.

-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운용 시 「국가유공자법」에 포함²⁾되지 않는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를 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9개 지자체(77.8%)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총 2,460면이 설치됨.

< 유공자 주차구역 현황 >

(단위 : 면,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면수	1,078	227	125	164	89	34	72	67	202	31	225	59	133	5	38	35	28
비중	41.3	8.7	4.8	6.3	3.4	1.3	2.8	2.6	7.7	1.2	8.6	2.3	5.1	0.2	1.5	1.3	1.1

자료: 국가보훈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 3. 전몰군경 / 4. 전상군경 / 5. 순직군경 / 6. 공상군경 /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 12. 4·19혁명부상자 / 13. 4·19혁명공로자 / 14. 순직공무원 /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후략)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복지정책에서 우선으로 배려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법률에 근거한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³⁾과 환경친

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⁴⁾이 있는바, 유공자 주차구역과 같이 법률상 근거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이 조례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임신부·영유아 등 가족배려 주차구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가족(임산부, 영유아 등)배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은 별도의 임신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⁵⁾⁶⁾

- 둘째, 현재 운영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우선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를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국가유공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 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보훈대상자까지 포함⁷⁾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는 2025년 9월 기준 가족배려 주차장을 공공주차장 총 747개소에 12,513면 구성하였음.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배려주차장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6) 참고자료 참조

7)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등 예우대상자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지원’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⁸⁾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사회적 배려를 넘어선 국가의 책무로 타 배려주차장과 달리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운영 기준이 상이하여 법률 개정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0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290. 주차환경 개선 지원

□ 조례현황

○ **(주차장조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 운영

- (예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가족배려주차장(제25조의2) 근거규정 마련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11.1., 2023.7.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12.30., 2023.7.1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 3에 따른다.

○ **(별도조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은 별도의 임신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충청남도 임신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신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신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임신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도지사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

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신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